ĐIỀU ƯỚC QUỐC TẾ

Thông báo số 19/2022/TB-LPQT ngày 18 tháng 5 năm 2022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Công hàm trao đổi sửa đổi Quy tắc cụ thể mặt hàng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3-A của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Tiếp theo Công báo số 423 + 424)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4.10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 · 튜브 · 밸브 ·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 · 튜브 · 밸브 ·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599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5.21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 · 담배 · 식품 ·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	
		8476.8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압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취입 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성형기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8.10	-기계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토목공사 · 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60	-증발식 에어쿨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탑승교	
		8479.71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8479.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 체 · 시프팅기(sifting machine) · 균질기 · 유화기 ·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0.30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1.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40	-안전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2.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82.91	--볼・니들・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교류 발전기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입식 변압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변압기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그 밖의 유도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	
		8506.10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6.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리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60	-에어징크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80	-그 밖의 일차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40	-니켈-철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그 밖의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 채소즙 추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 · 이발기 · 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면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 · 자석발전기 · 점화코일 · 점화플러그 · 예열플러그 · 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 교류발전기)와 개폐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1.10	-점화플러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와 점화코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그 밖의 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30	-음향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10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4.2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땜질용이나 납땜용 기기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 · 헤어컬러(hair curler) ·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 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그 밖의 오븐, 쿠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제 8528 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9.81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 · 테이프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자기식 매체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광학식 매체	
		8523.41	--기록이 안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반도체 매체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 음성기록기기 ·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 · 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라디오 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7.9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음극선관 모니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8.4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모니터	
		8528.5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프로젝터(projector)	
		8528.6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8.73	--기타(단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용 · 궤도용 · 도로용 · 내륙수로용 · 주차장용 · 항만용 ·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 · 안전기기 · 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 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 · 가변식 · 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	--탄탈륨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4		인쇄회로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자동차단기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5.4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계전기(繼電器)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6.50	-그 밖의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8536.61	--램프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 · 제 8536 호 ·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8.1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제외한다)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아크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50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 광전관[예: 진공관 ·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천연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단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관	
		8540.81	--수신관이나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540.91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3.20	-신호발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전기도금용 · 전기분해용 ·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전극	
		8545.11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7 부 차량 · 항공기 ·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86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1.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603.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606.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보기(bogie)·비셀보기(bissel-bogie)·차축·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12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30	-혹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607.91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 · 안전용 ·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 · 안전용 ·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8701.91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2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초과 37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3	--엔진의 동력이 37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4	--엔진의 동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13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5	--엔진의 동력이 13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2.3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2.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7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 톤 초과 20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crane lorr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5.30	-소방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8.21	--안전벨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가. 기어박스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가. 방열기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가.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 · 창고 · 부두 ·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차량	
		8709.11	--전기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60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714.91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그 밖의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1		기구 · 비행선 ·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1.00	-기구 · 비행선 ·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 ·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헬리콥터	
		8802.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초과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 서보비틀(suborbital) · 우주선 운반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프로펠러 ·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 · 유람선 · 페리보트(ferry-boat) · 화물선 · 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ta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8902.00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 · 소방선 · 준설선 · 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준설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 ·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 탱크 · 코퍼댐(coffer-dam) · 부잔교(landing stage) · 부표 ·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8 부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0 류-제 92 류)				
90			제 90 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대물렌즈	
		9002.11	--카메라용 · 영사기용 · 사진 확대기용 · 사진 축소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20	-필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		안경 · 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테와 장착구	
		9003.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 · 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 · 단안경 · 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30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40	-즉석인화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사진기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카메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	-촬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20	-영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촬영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영사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08		투영기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60	-영사용 스크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1.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80	-그 밖의 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기기 · 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2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30	-수준기(水準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5.40	-사진측량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6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 · 설계용구 · 계산용구(예: 제도기 · 축소확대기 · 분도기 · 제도세트 · 계산척 · 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 · 설계용구 · 계산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30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 주사기 · 바늘 · 카테터(catheter) · 케뉼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2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20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 ·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 ·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 · 고압 발생기 · 조절반 · 스크린 ·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 ·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2.14	--기타(내과용 · 외과용 ·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30	-엑스선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 · 목재 · 직물 · 종이 · 플라스틱)의 경도 · 항장력 · 압축성 · 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4.10	-금속재료 시험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 · 액면 ·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 · 액면계 · 압력계 · 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 · 제 9015 호 · 제 9028 호 · 제 9032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압력의 측정용 ·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 · 소리 ·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7.30	- 분광계 · 분광광도계 ·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90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		기체 · 액체 ·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20	-액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30	-전기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9.10	-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9030.82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1.20	-테스트벤치(Test ben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2.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3		제 90 류의 기계 · 기기 · 장치 ·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33.00	-제 90 류의 기계 · 기기 · 장치 ·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 ·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1.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2.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4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9104.00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		그 밖의 클록(clock)	
			-자명종시계	
		9105.1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벽시계	
		9105.2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5.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7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구동식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20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80	-그 밖의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 시곗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14.40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			제 92 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6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츠 · 마라카스(maracas)]	
		9206.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츠 · 마라카스(maraca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 · 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 · 디스크 · 롤), 박절기(metronom) · 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9 부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3 류)				
93			제 93 류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 · 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 박격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92

(Xem tiếp Công báo số 427 + 428)

VĂN PHÒNG CHÍNH PHỦ XUẤT BẢN

Địa chỉ:	Số 1, Hoàng Hoa Thám, Ba Đình, Hà Nội
Điện thoại liên hệ:	
- Nội dung:	080.44417; Fax: 080.44517
- Phát hành:	080.48543
Email:	congbao@chinhphu.vn
Website:	http://congbao.chinhphu.vn
In tại:	Xí nghiệp Bản đồ 1- Bộ Quốc phòng